



#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안내

1. 귀 기관 및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 9. 25.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8조의2 와 관련, 기존에 입법예고 등으로 안내한 「의료법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드리니, 의료기관 등에 안내하여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조문순서, 서식번호 등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어, 추후 확정안을 배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붙임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안) 1부. 끝.

##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주무관	심민정	서기관	이유리	보건의료정책과	전결 2023. 8. 28.
				장	차전경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411 (2023. 8. 28.)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4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09 팩스번호 044-202-3924 / [alswjd8995@korea.kr](mailto:alswjd8995@korea.kr) / 대국민 공개